

전 세 연 장 계 약 서

임대인 _____ (이하 "갑")과 임차인 _____ (이하 "을")은 아래 임대차계약(이하 "원계약")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.

[주택과 원계약]

주택 소재지	_____		
원계약일	20____년 ____월 ____일	원계약 확정일자	20____년 ____월 ____일
원계약 기간	20____년 ____월 ____일 ~ 20____년 ____월 ____일	원계약 보증금	금 _____원整
계약의 종류	☒ 합의에 의한 재계약 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		

[연장 조건]

연장 기간	20____년 ____월 ____일 ~ 20____년 ____월 ____일	연장 후 보증금	금 _____원整
보증금 변동	_____	월 세	없음 (전세)

제1조 (기간의 연장)

갑과 을은 원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20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연장한다.

제2조 (보증금과 차임)

- 보증금은 원계약과 같은 금 _____원으로 하며, 이 계약으로 주고받을 돈은 없다.
- 이 계약은 전세 계약으로 차임(월세)은 없다.

제3조 (재계약의 성격)

- 이 계약은 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갑과 을이 합의하여 맺은 재계약이며, 이 계약으로 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지 아니한다.
- 연장 기간 중 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이 합의하거나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4조 (확정일자와 신고)

보증금과 차임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을의 우선변제권은 원계약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유지되며, 이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다.

제5조 (권리관계의 확인)

원계약 이후 이 주택에 새로 생긴 권리는 특약사항에 적은 바와 같으며, 을은 이를 확인하고 이 계약을 맺는다.

제6조 (그 밖의 사항)

- 을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갑은 지체 없이 협조한다.
- 이 계약에서 바꾸지 아니한 사항은 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갑과 을은 원계약서와 이 계약서를 함께 보관한다.

[특약사항]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·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____년 ____월 ____일

구 분	성 명	주민등록번호	연락처	주 소	서명·날인
임대인 (갑)	_____	_____	_____	_____	(인)
임차인 (을)	_____	_____	_____	_____	(인)